

## F A X 전 송

|      |                                                                                                                                                                                                                                                                                                                                                                                                                                                                                                                                                                                                                                                                                                                                                                                                                                                                                                                                                                                                                                                                                                                                                                                                                                                                                                                 |
|------|-----------------------------------------------------------------------------------------------------------------------------------------------------------------------------------------------------------------------------------------------------------------------------------------------------------------------------------------------------------------------------------------------------------------------------------------------------------------------------------------------------------------------------------------------------------------------------------------------------------------------------------------------------------------------------------------------------------------------------------------------------------------------------------------------------------------------------------------------------------------------------------------------------------------------------------------------------------------------------------------------------------------------------------------------------------------------------------------------------------------------------------------------------------------------------------------------------------------------------------------------------------------------------------------------------------------|
| 수 신  | 관내 대행사업자                                                                                                                                                                                                                                                                                                                                                                                                                                                                                                                                                                                                                                                                                                                                                                                                                                                                                                                                                                                                                                                                                                                                                                                                                                                                                                        |
| 발 신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전화: 032-525-0075, FAX: 032-502-0607)                                                                                                                                                                                                                                                                                                                                                                                                                                                                                                                                                                                                                                                                                                                                                                                                                                                                                                                                                                                                                                                                                                                                                                                                                                                           |
| 발송일자 | 2019. 06. 20(목)                                                                                                                                                                                                                                                                                                                                                                                                                                                                                                                                                                                                                                                                                                                                                                                                                                                                                                                                                                                                                                                                                                                                                                                                                                                                                                 |
| 제 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준수(점검, 기록, 관리 등) 협조 안내                                                                                                                                                                                                                                                                                                                                                                                                                                                                                                                                                                                                                                                                                                                                                                                                                                                                                                                                                                                                                                                                                                                                                                                                                                                                       |
| 내 용  | <p style="text-align: center;"><b>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준수(점검, 기록, 관리 등) 협조 안내</b></p> <p>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가 제정·시행(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2016.1.29. 제정, 2016.2.7 시행)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li> <li>-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 및 제108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1)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2)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1)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기록,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p> <p>(*2)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관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서 등에서 화재안전 특별점검시 직무고시 위반으로 적발·통보되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첨 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p> <p>( <a href="http://www.keea.or.kr/head/wmo/getWN001F01List.do?branId=22&amp;boardId=N03">http://www.keea.or.kr/head/wmo/getWN001F01List.do?branId=22&amp;boardId=N03</a>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b> </div> |

## # 첨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1. 제정 배경**

- 정부에서 실시한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기록 부실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13.2)를 근간으로 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함('16.1.29 제정, '16.2.7 시행)

**2. 주요 내용**

-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수용가의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주기, 시험 항목별 예시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규정의 예'는 협회 홈페이지(전기정보/법령정보의 기타 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비의 권장 교정주기 등) 전기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권장 장비 및 장비의 권장 교정주기를 정함  
- 다만, 장비의 교정대상, 교정주기 등은 권장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가능
- (점검기록 보존 및 정기검사 시 협조) 전기설비의 점검기록 내용은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검사대상 이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현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점검기록 내용을 검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제시)하여야 함
- (중대사고의 대처 및 통보)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유형별로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사망 2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 이상 등)에 대하여는 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
- (점검기록 양식)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양식을 제정

### 3. 직무고시 관련 주요 Q&A

Q)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작성 의무"의 명확한 의미?

A)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중 전기설비 확인·점검에 대한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임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직무고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점검항목, 점검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한 것임

Q)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대상과 점검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발전설비 등 전기설비 전체를 의미

-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대상은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 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 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발전설비 등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전용부분은 임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업무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관리범위를 대상으로 점검(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Q)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

A)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수용가 특성에 맞게 매년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 다만, 소유자나 설비변경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Q)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법적 효력은?

A)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시 과실 등 책임과 관련하여 참작 사항임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체 작성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 내에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문제 발생시 책임과 관련하여 참작 사항이 될 수 있음

**Q) 점검 항목, 점검 주기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

-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임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항목, 점검 범위를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비고]에 따라 ○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포함하여 점검
- 다만, 산업부는 안전공사의 검사(사용전검사·정기검사)와 중복되는 점검항목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직무고시의 연차(정밀)점검을 대체 가능토록 함

**Q) 정전점검이 포함된 정밀(연차)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A)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 실시

- 생명·안전 관련 시설 및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 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 가능
- 장비구비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전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점검을 의뢰 가능

**Q) 계측장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A)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보유 의무는 없으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장비구입·대여·외부위탁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함이 바람직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기관)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4 및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상주)는 장비보유무의무가 없음
- 다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장비 구입·대여·외부위탁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탁관리업체 본사에서 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Q)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점검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기검사 대상이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이외 전기설비의 점검이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검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산업부에서는 점검기록 제출에 소요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점검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안내

**Q) 안전관리 교육대상은 전 직원인가요?**

**A)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종업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운전·조작할 수 있는 자 의미

**Q)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시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관리 교육시간은 자율로 시행(교육 실시내용은 4년간 기록 보존)**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 안전관리교육의 주기와 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하여 갈음할 수 있음

※ 참고 : ‘전기안전관리규정의 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에서 예시한 전기안전관리규정(삼주용/대행용) 제11조에서 1년에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